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 등>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등 (안 제28조)	3
2. 기관장의 계약 이행실적 매년 평가 및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등(안 제31조제6항)	8
3.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제출 의무화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등(안 제46조의2 신설)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8. 25.

다.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차례만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의 경우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

나. 기관장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등 (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 - 기관장: <u>3년</u> - 이사, 감사: 2년 - 1년을 단위로 <u>연임 가능</u>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 - 기관장: <u>2년</u> - 이사, 감사: 2년 - 1년을 단위로 <u>한차례만 연임 가능</u>
<신 설>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봄
○ 직무수행기간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단서 신설>	○ 직무수행기간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다만,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 날까지로 함

현행법¹⁾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연임 기간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과 임기를 연계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 기간을 제한하며,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킬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대통령 임기 말에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소위 ‘공공기관장의

알박기 인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으로,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 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연계시킬 경우 공공기관 장의 인사와 관련된 이와 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울산·대전·부산·광주광역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사례도 있음.

[지자체장과 지방공공기관의 장 임기 일치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07-29
이천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11
용인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2-12-2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12-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
오산시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4-10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5-10
안산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4
창원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4-7-15
밀양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4-10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7-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5-9-29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5-10-10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연계시키는 경우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보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일괄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교체로 기관 운영의 공백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여 임기 연계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정철학의 공유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임기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자율책임경영 보장 및 임기 보장, 정부 교체 시기마다 기관장 일괄 교체시 사업 연속성 저해, 행정비용 발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둘째, 이사·감사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에 따르면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이사·감사도 연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최대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임 최대 기간을 2~3년 등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아 임기 단축, 연임 제한 및 임기 만료 시점의 소급 적용 여부 등 적용 대상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관장 임기를 단축하거나 임원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들²⁾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의안번호 제2200875호(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017호(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28호(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083호(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41호(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67호(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06호(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788호(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830호(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 기관장의 계약 이행실적 매년 평가 및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등(안 제31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 기관장과의 계약 등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u>재임 중 1회</u> 평가할 수 있음	○ 기관장과의 계약 등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u>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계약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u>

현행법³⁾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임추위는 이러한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내용이나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이러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31조제6항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이러한 계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해임 중 1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장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해임·해임 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 대한 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장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 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현행법 제48조⁵⁾에서는 계약의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미제출·거짓으로 작성·제출하거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

4) 기획재정부도 기관장의 경영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현재는 경영실적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경영실적평가는 기재부장관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31조제6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평가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그 평가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실적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평가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기관장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경영실적평가와 별도로 혹은 경영실적평가 시 별도의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정한 평가 기준 및 방식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 비용 및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의안번호 제2211830호,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제출 의무화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등(안 제4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u> - <u>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u> - <u>기재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u> 1. <u>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성 여부</u> 2. <u>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u>기재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u>

개정안은 새로운 정부 출범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게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운영 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

하도록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능력이 저조한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46조제4항⁶⁾은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 장에게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중 새로운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새로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둘째, 새로운 경영목표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는, 국정철학 및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¹의 의결을 거쳐 확정²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¹의 의결을 거쳐 확정²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¹의 의결을 거쳐 확정²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⁷⁾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그 직무나 책임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해임 근거를 마련(제35조)하고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평가실적이 저조한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근거를 마련(제36조 및 제48조)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7)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과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8) 기획재정부도 현재 경영평가지 정부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 중이므로 추가 평가를 신설하는 것은 기관에 불필요한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더불어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할 경우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적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의안번호 제2211267호,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 -----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 제46조의2제3항----- ----- ----- -----

현행	개정안
⑦ (생략)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u>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u>연임될 수 있다.</u>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임기) ① ----- -----<u>임원</u> <u>의</u>-----. -----. ② ----- -----<u>한차례만 연임</u> <u>될</u>-----.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과 같음)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생략)	⑥ ----- ----- ----- ----- ----- ----- ----- ----- ----- -----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계약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제34조(결격사유) ① ----- -----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략) <u><신설></u>	----- -----.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6항·제7항-----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3항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

현 행	개 정 안
	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57